

# 남북 경협에서 바세나르체제의 영향과 시사점

황동언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해 취하는 국제적 제재 조치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차원의 제재 – 이는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체제, 대량 파괴 무기 제조와 관련된 물품·기술 및 장비의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와 각국의 개별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바세나르체제는 여타 협약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수출 통제는 각국의 자율적인 국내 입법 범위 내에서는 실시하는 자발적 정치협의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적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규정이다.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총 33 개국으로서, 회원국들은 위험국 및 불안전한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기술 판매를 감시·제한하며, 이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 교환 및 논의를 주도한다.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내용은 통제 품목의 작성 및 회원국간 정보 교환이다. 통제 품목은 일반 리스트,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간 정보 교환은 일반 정보 교환,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 교환, 무기 관련 정보 교환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바세나르체제는 미국의 對북한 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국제적 다자간 협의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므로, 미국의 바세나르체제에 대한 영향력 역시 크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세나르체제 등에 입각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 관련 통제 물자는 9 개 부문(총 189 개 통제 번호)의 일반 산업용 물자와 방위 산업용 물자(총 22 개 통제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통제 품목의 적절한 재구성, 미일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 활동,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

난 1월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386급 컴퓨터의 경우도 모뎀,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등 부가 장치의 기능을 보고 반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발표의 기저에는 바세나르 통제체제와의 공동 보조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남북 경협에서 바세나르 통제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세나르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바세나르체제의 내용

과 의미를 분석하고, 바세나르체제 하에서 효과적인 남북 경협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對북한 제재와 바세나르체제

#### 세계 각국의 규제 조치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제재 조치이다. 이러한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의 세계 평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표 1〉 미국의 对북한 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관련 법 규정	제재 조치 내용
수출관리법(1950)	- 对북한 수출 금지 - 소관 부서: 상무부
적성국교역법(1950) (해외자산통제규정)	-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해외자산 통제규정」 발표 - 소관 부서: 재무부
무역협정연장법(1951)	- 对북한 최혜국 대우(MFN) 부여 금지
국제무기거래규정(1955)	- 북한과의 방산 물자 및 용역의 수출입 금지
대외원조법(1962)	- 对북한 원조 제공 금지
통상법(1975)	- 对북한 일반 특혜 관세(GSP) 공여 금지
수출관리법(1975)	-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 그룹 Z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금수 조치 실시
수출입은행법(1986)	- 미국 수출입은행의 对북한 보증 및 여신 제공 금지
수출관리법(1988)	-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여 무역, GSP 공여, 군수 통제 품목 상의 물품 판매, 대외 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여신 제공 금지 - 국제 금융 기관에서 对북한 원조 제공 결정시 반대표 투표로 지시
국제무기거래규정 개정(1988)	- 국제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대한 방산 물자 및 용역 판매와 수출입 금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조치(1992)	- 이란·시리아의 미사일 제조 활동에 대한 북한 참여 확인에 따라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2년간 미 행정부의 북한과의 계약 금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을 위한 체제이다. 이러한 조치로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비인도적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대량 폭파 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 기술 및 장비의 이전을 통제하는 각종 수출 통제체제이다. 여기에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호주그룹(AG),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포함된다.

한편, 두번째 조치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对テ러국 제재**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1>은 1994년 베를린합의 이전까지 미국의 **对북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통제체제<sup>1)</sup>는 민수용과 군용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이다. 바세나르체제는 지난 1996년 7월 정식 설립되어, 1996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7

월 제1차총회가 개최되었으며, 1997년 11월부터 회원국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었다.

바세나르체제는 舊COCOM(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Multilateral Strategic Export Controls)을 대신하여 설립되었다. 냉전체제 하에서 **對공산권 전략 물자 규제** 체제였던 COCOM은 90년대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로의 변신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3월 신체제 설립을 목표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세나르체제이다.

#### ○ 주요 목적

바세나르체제는 기존의 대량 폭파 무기 비확산체제(NSG, ZC, AG, MTCR 등)를 보완하여 상용 무기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안보 및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전략 물자의 이전이 군비 증강 또는 무기 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이 체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지칭하지는 않으며, 평화적 목적 수행을 위한 이전을 방

1) 정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 ○ 회원국 및 회원국 의무

2000년 3월 현재 회원국 수는 33 개국<sup>3)</sup>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4월 원 당사국으로同체제에 가입하였다. 현재 비엔나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전문가 그룹회의 3~4 회, 실무그룹회의 2 회 및 총회 1 회<sup>4)</sup>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위험국 및 불안전한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기술 판매를 감시·제한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정보 교환 및 논의를 주도한다. 통제 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 결정은 각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며, 회원국은 모든 통제 품목의 이전 및 거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sup>5)</sup> 한 국가의 거부 통보가 다른 국가의 동일 품목에 대한 이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회원국이 최근 3년 동안에 다른 회원국에 의해 거부된 품목(민감 및 초민감 품목)과 동일한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가능한 30 일 이내(최장 60 일 이

〈표 2〉 비회원국에 관한 일반적 정보 교환 항목

획득 활동에 관한 정보	- 회사명/기관명 - 획득 방법 및 경로 - 국내외 획득 네트워크 - 외국 기술의 사용 여부 - 민감 최종 사용자 - 획득 형태
수출 정책에 관한 정보	- 수출 통제 정책 - 민감 품목 및 기술과 관련한 교역 현황
중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 중요 프로젝트의 개요 - 사용 기술의 수준 - 사업의 진행 상황 - 향후 계획 - 획득 회망 기술 - 중요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 및 기관 - 우회 획득 활동
기타 관련 정보	

자료: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1.

2)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제1절 4항([www.wassenaar.org](http://www.wassenaar.org)).

3)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터키, 체크,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평가리.

4) 바세나르체제 총회가 작년에는 12월 2~3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5) 통보 의무는 비회원국과의 거래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내)에 허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sup>6)</sup>

향상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 ○ 통제 품목

회원국은 불법 이전 또는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sup>7)</sup>에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한다.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리스트(tier1)는 기본 리스트와 별도의 민감 품목(tier2), 초민감 품목(sub-set tier2)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 품목은 각국의 통제 경험과 기술

### ○ 회원국간 정보 교환

회원국간 정보 교환은 크게 일반 정보 교환,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 교환, 무기 관련 정보 교환으로 구성된다.

먼저 일반 정보 교환의 경우 회원국은 회원국간 통제 정책의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상용 무기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으

〈표 3〉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관련 특정 정보 교환 항목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의 거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li> <li>- 수입국(최종 도착국)</li> <li>- 통제 리스트상의 품목 번호</li> <li>- 제품 개요</li> <li>- 허가 거부 번호</li> <li>- 거부 수량</li> <li>- 거부 사유</li> </ul>
민감 품목 및 초민감 품목의 거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li> <li>- 통제 리스트상의 품목 번호</li> <li>- 제품 개요</li> <li>- 거부 수량</li> <li>- 최종 사용 용도</li> <li>- 거부 사유</li> <li>- 수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국가</li> <li>· 최종 수하인 또는 최종 사용자의 성명, 주소, 국가</li> </ul> </li> <li>- 기타 관련 정보</li> </ul>
민감품목의 허가(이전)시 통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li> <li>- 통제 리스트상의 품목 번호</li> <li>- 제품 개요</li> <li>- 허가(이전) 수량</li> <li>- 도착국(수입국)</li> </ul>

자료: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2.

6)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제2절 4항.

7) '부속서 5' 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List of dual use goods and technologies and munitions list)이다.

로 인한 위험에 관련 일반 정보를 교환한다. 둘째,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 교환의 경우 회원국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과 관련하여 거부 사유가 바세나르협정의 목적과 합치되는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거부 실적을 통보한다.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해 회원국은 1년에 2회 일괄 집계하여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거부 실적을 통보한다. 특히 민감 품목과 초민감 품목에 대해 회원국은 모든 거부 실적을 가능한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최장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민감 품목에 대해 회원국은 허가 또는 이전을 1년에 2회 일괄 집계하여 통보해야 한다.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국내 상황 및 민감도를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그 국가의 이행 상황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에 관한 정보 교환의 경우 UN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 상의 7대 무기류<sup>8)</sup>에 대한 이전 실적을 6개월마다 통보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수량과 수입국이 포함되며,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대, 주요 재원은 제외된다.

###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남한의 대북한 제재

바세나르체제는 기본적으로는 회원국들

간에 엄격하게 통제된 협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바세나르체제 하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전략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 물자의 수출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공고가 있다.

### 대외무역법

먼저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sup>9)</sup>에서는 제3장 수출입 거래 가운데 제4절 전략 물자의 수출입 항목에서 기본적인 전략 물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제21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 행정 기관 장의 수출 허가를 받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 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9장 별칙 부문에서는 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입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물자 거래 부적격자에

8) 특정한 종류의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등 7개 무기류이다(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2).

9) 1999년 2월 8일 최종 개정되었다.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sup>10)</sup>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략 물자와 관련하여 가장 자세한 규정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이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1993년 상공자원부 고시로 제정되었으며, 1994년 6월 전문 개정을 거쳤다. 현재의 공고는 1999년 5월 17일 개정된 고시이다.

전략 물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전략 물자수출입공고 제1장 총칙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총칙은 크게 8절<sup>11)</sup>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수출 허가 관련 부분, 수입 증명 관련 부분, 전략 물자의 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기관

물자 목록	세부 세항	허가 기관
바세나르체제 관련 물자	일반 산업용 물자	산업자원부 장관
	방산 물자	국방부 장관
원자력 비핵산체제 관련 물자	원자력 전용 품목	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	산업자원부 장관
미사일 비핵산체제 관련 물자	일반적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
	수입국의 수입 목적이 군사적인 경우	국방부 장관
생화학무기 비핵산 체제 관련 물자	일반적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
	수입국의 수입 목적이 군사적인 경우	국방부 장관

자료: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4조.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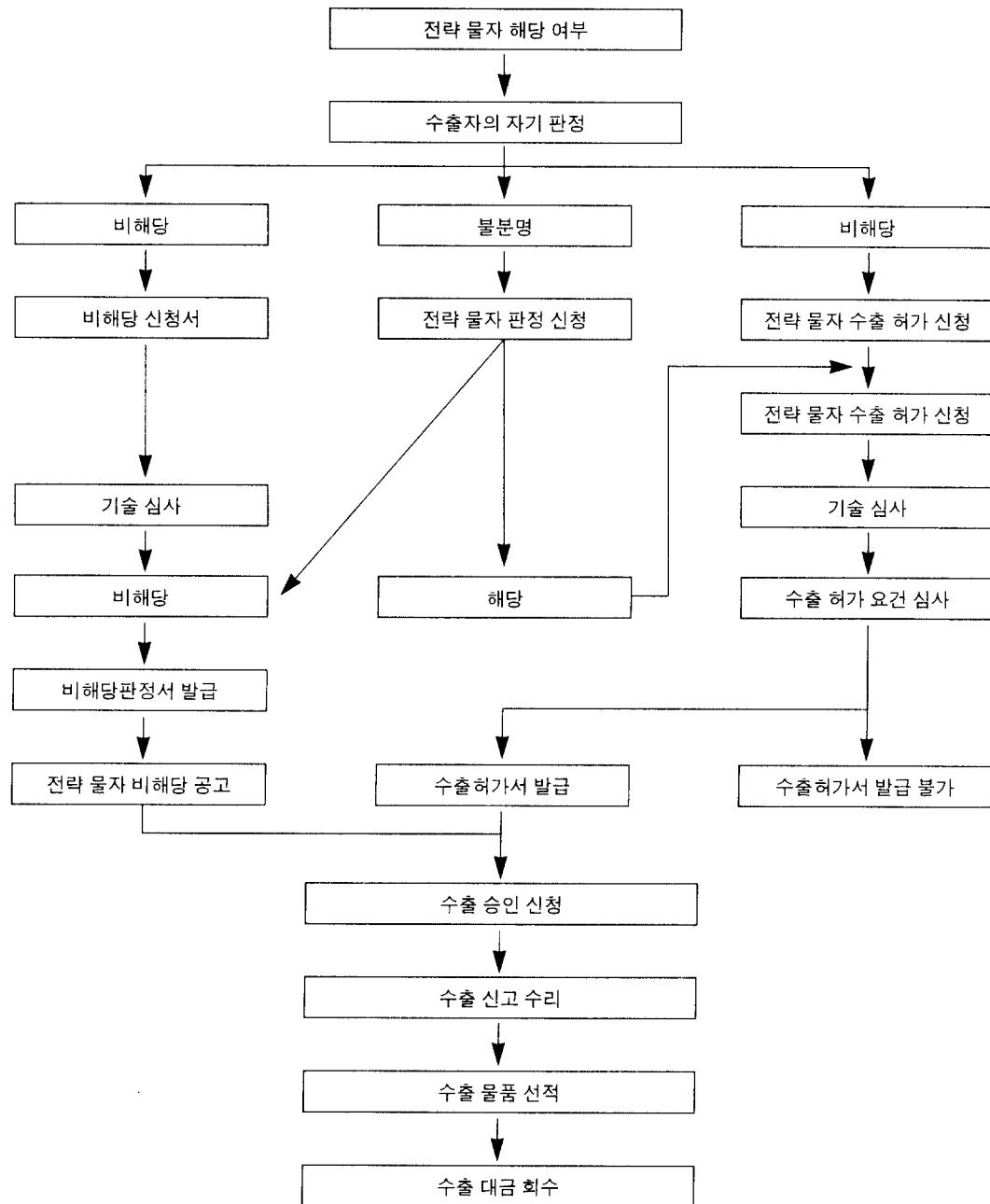
11) 제1절은 수출 제한 지역과 수출 허가 기관 등, 제2절은 개별 수출 허가, 제3절은 포괄 수출 허가, 제4절은 재수출 허가, 제5절은 전략 물자 수입증명서의 제출과 발급, 제6절은 전략 물자 통광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절은 수입 전략 물자의 관리, 제8절은 전략 물자의 판정 등이다.

먼저 수출 허가 관련 부분의 경우,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기관은 각각의 품목별로 다르다.

수출 허가 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① 수출 물품의 전략 물자 해당 여부, ② 수출 물품의 수입국가, ③ 수출 물품의 기술 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④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⑤ 최종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가 확인한 사용 용도의 신뢰성, ⑥ 수출 물품의 수출 제한 지역으로의 유출 가능성, ⑦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둘째, 수입 증명서의 제출과 발급의 경우이다. 먼저 전략 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

(그림) 전략 물자 수출 절차



는 전략 물자 수입증명서를 수출 허가 신청 시 수출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전략 물자 수출자의 요구가 있어 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 허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편 수입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마지막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전략 물자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바세나르체제 관련 내용은 제2장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수출 부문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바세나르체제 관련 통제 품목은 <표 5>와 같다.

수출 제한 지역의 경우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

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sup>12</sup>를 첨부하여 수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 물자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① <표 5>의 일반 산업용 물자 품목으로서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경우, ② <표 5> 품목 가운데 민감·초민감 또는 비확산체제(NSG 품목, MTCR 품목, AG 품목) 관련 통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회원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 바세나르체제의 경제적 의미와 미국의 대북한 제재

바세나르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협약 수

<표 5> 바세나르체제 관련 통제 물자 목록

일반 산업용 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재(총 36 개의 통제 번호)</li> <li>- 소재 가공(총 24 개의 통제 번호)</li> <li>- 전자(총 26 개의 통제 번호)</li> <li>- 컴퓨터(총 10 개의 통제 번호)</li> <li>- 전기 통신 및 정보 보안(총 7 개 통제 번호)</li> <li>- 센서 및 레이저(총 36 개 통제 번호)</li> <li>- 항법 및 항공 전자 공학(총 10 개 통제 번호)</li> <li>- 해양 기술(총 20 개 통제 번호)</li> <li>- 추진 장치(총 20 개 통제 번호)</li> </ul>
방위 산업용 물자	- 총 22 개 통제 번호

자료: 산업자원부.

주: 각 품목에는 품목의 개발·생산·운용에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S/W 및 기술이 포함됨

12) 첨부 서류로는 ① 전략 물자 (재)수출허가(신청)서 3부, ②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가운데 1부, ③ 전략 물자의 기술적 특성 명세서, ④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⑤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 물자 수입증명서, ⑥ 기타 수출 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다.

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전략 물자의 이전이 군비 증강 또는 무기 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체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지칭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의 국내 입법도 자율적이며, 그 입법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세나르체제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며, 각 회원국의 수출 통제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되 수출 통제는 각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정치협의 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성격을 지닌 바세나르체제는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바세나르체제는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작년 9월 미국이 **對북한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을 때도,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간 협정에 토대를 둔 **對북한 제재**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즉 미국의 **對북한 제재** 해제 대상은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위산업물자법 등에 묶인 일반 품목의 수출입과 투자, 금융 거래, 항공기 선박 기항 등이며, 군사적 목적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 지정은 해제했지만, 테러국 지정과 공산 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다.<sup>13)</sup> 구체적인 해제 대상은 <표 6>과 같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별적 **對북한 제재** 조치와 바세나르체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제적 다자간 협의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세나르체제에 대한 영향력 역시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조치의 향방에 따라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對북한 규제**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향후 과제

바세나르체제는 국제적인 협의체이다. 비록 자발적인 협의 기구라고 할지라도, 암묵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對북한 제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등 이중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전략 물자 공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통제 품목의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13) 왜냐하면 이러한 해제는 의회의 동의와 입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세나르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대부분 무기류 그 자체이기 보다는 무기류 등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로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각종 산업 물자 및 기술이다. 이를 품목에 대한 전용 여부 해석은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바세나르 통제 품목에 대한 냉정한 재해석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우리 정부로서는 군사적 목적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통제 품목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바세나르체제 하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많은 통제 품목을 해제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 따라서 미일과 같이 바세나르체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對북한 통제 품목을 해제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이다. 바세나르체제 자체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 무기,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이전되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신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의 EU 국가들과의 교류 활성화 등 활발한 외교 활동과 북미간 협상은 어느 정도 바세나르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続

〈표 6〉 미국의 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 및 비해제 대상

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산 상품과 원재료의 수입</li> <li>- 미국 기업 및 자회사들의 소비재, 금융 서비스, 비군사 관련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재수출</li> <li>-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사회간접자본·여행 관광업 등에 대한 투자</li> <li>- 미국 국적인 북한인에 대한 송금</li> <li>- 미국 국적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비군사 관련 화물의 북한 유출입</li> <li>- 북한과 미국간의 상업적 비행</li> </ul>	
비해제 대상	테러 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품 물자 품목에 있는 물품과 기술의 수출</li> <li>-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이중 목적 사용 가능한 물품의 허가없는 수출</li> <li>- 해외지원법, 농업교역개발법, 수출입법, 평화봉사단법에 따른 지원</li> <li>- 국제 금융 기관에 의한 북한 응자 지원</li> <li>- 전리품의 이전</li> <li>- 대미 수출에서 면세 특혜</li> <li>- 재무장관의 허가없는 미국인과 북한 정부간의 금융 거래</li> <li>- 북한내 발생한 기업·개인 소득에 대한 해외 소득 면제 요구</li> </ul>
	미사일통제법 등 비확산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對북한 수출 통제 품목의 수출을 위한 개인별 허가 불허</li> <li>- 특정 북한 기관의 미국 정부간 계약 불허 및 생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li> <li>- 미사일 장비 기술 관련 물품, 항공 기술 개방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對북한 수출 금지 및 미국 수입 금지</li> <li>-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관련 품목의 對북한 수출 금지</li> </ul>

## 〈부록〉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 회원국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원자력 공급국그룹 (NSG)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 (MTCR)	호주그룹 (AG)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알바니아	독일	페루	
	남아공	남아공		알제리아	가나	필리핀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르메니아	그리스	폴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르젠토나	기니	포르투갈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가이아나	카타르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바레인	아이슬란드	몰도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이란	러시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세인트루시아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베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	볼리비아	일본	세네갈	
불가리아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	케나	세이셸	
	브라질	브라질		고비나	쿠웨이트	싱가포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브라질	라오스	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브루나이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불가리아	레소토	남아공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부룬디	리투아니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키나파소	룩셈부르크	스리랑카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카메룬	말라위	수리남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캐나다	몰디브	스와질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말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중국	몰타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쿡제도	몰리타니	타지키스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몰리셔스	토고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튀니지	
체크	체크			크로아티아	모나코	터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쿠바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키프로스	모로코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	체크	나미비아	영국	
폴란드	폴란드			덴마크	네팔	탄자니아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에쿠아도르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우루과이	
한국	한국			적도기니	나제르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이디오피아	노르웨이	베네주엘라	
(33 개국)	(34 개국)	(28 개국)	(30 개국)	피지	오만	베트남	
				핀란드	파키스탄	짐바브웨	
				프랑스	파나마		
				잠비아	파라과이		
				조지아	파푸아뉴기니		
					(116 개국)		